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. 2015고합1046, 2016고합351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유종완(기소), 장려미(기소 및 공판), 손찬오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정암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(원심: 피고인 1)을 징역 7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벌금 40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400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